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5년 3월 11일 및 3월 15일 산티아고에서 각서교환 및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국문번역본)

(칠레측 제안각서)

No. 0901

칠레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2003월 2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랍니다.

본 협정 스페인어본의 검토 결과 제5.4장 (수출관련 의무)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수입자”는 해당어가 “수출자”와 동의로 쓰인 영문본 및 국문본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공화국 정부는 “수입자”를 사용하는 것은 착오이며,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레 외무부는 단어 “수입자”는 “수출자”로 대체하고 스페인어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5. Cada Parte dispondrá que un exportador o productor localizado en su territorio que llene y firme un certificado o declaración de origen conserve en dicho territorio, por un período de cinco años a contar de la fecha de la firma del certificado o declaración de origen o por un plazo mayor que pudiere establecer la Parte, los registros relativos al origen del bien respecto del cual se solicitó trato arancelario preferencial en el territorio de la otra Parte, incluyendo los referentes a:

- (a) la adquisición, los costos, el valor y el pago del bien que se exporta de su territorio;
- (b) la adquisición, los costos, el valor y el pago de todos los materiales, incluyendo los materiales indirectos utilizados en la producción del bien que se exporte de su territorio; y
- (c) la producción del bien en la forma en que dicho bien se exporta de

su territorio."

칠레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5년 3월 11일 산티

아고

(한국측 회답각서)

KCP - 034 - 2005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 외무부에게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칠레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수출관련 의무)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의 착오정정에 관한 칠레측 각서 2005년 3월 11일자 No. 0901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언급한 각서의 제안을 수락함과 아울러, 스페인어본이 각서에 인용된 바와 같이 수정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5년 3월 15일 산티

아고